

하이예크의 個人的 自由에 관한 一考察

朴 祥 洙*

目 次

- I. 序論
- II. 自由의 本質
- III. 하이예크의 自由
- IV. 하이예크의 自由에 대한 批判
- V. 結論

I. 序 論

자유에 대한 하이예크(F. A. Hayek)의 견해는 영국의 경험주의적 전통에 따라 영국적 자유주의를 추종한다. 따라서 그의 견해는 사색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의 무한한 능력을 중시하는 프랑수아적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경험주의적이고 비체계적이며, 그리고 전통과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하이예크의 자유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문제점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사회철학내에서 자유에 관하여 합의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하이예크의 견해도 조망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하이예크가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떤 유형의 자유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을 어떻게 한정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강제와 정의와 그 정도, 자유와 분배, 자유사회의 미래 등의 관점에서 하이예크의 자유를 비판하고자 시도하였다.

*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教授

Ⅱ. 自由의 本質

1) 自由의 定義

본문에서 다루는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즉 개인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데, 자유를 정의함에는 “~ 할 자유”(freedom to ~)와 “~ 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가 언급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람이 자유롭다고 말할 때 그는 그가 행동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방해물이나 束縛(constraint)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유라는 것은 일종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속박이 없으므로 어떤 것을 할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할 자유”와 “~ 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구분은 다음에서 논의되는 “積極的 自由와 消極的 自由”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로 속박과 관련하여 자유를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자유를 정의함에는 속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속박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을 의미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強要(compulsion) 또는 強制(coercion)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제약을 의미한다. 우리가 속박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며, 반면에 우리가 강요 혹은 강제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법상 약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대략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하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속박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강제가 수반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속박이 존재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속박과 단순한 무능력을 구분하여야 한다. 속박은 물론 “~ 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무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을 날고 싶은 자유, 우주선을 타고 마음대로 우주를 날고 싶은 자유 혹은 투명인간이 되고 싶은 자유 등은 인간의 현실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한 자유이다. 인간의 신체적 구조와 자연법칙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반드시 자유에 대한 속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자유를 논의할 때 우리는 공상적인 어떤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소망들을 다룬다. 예컨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것, 내가 대통령이 아닌 것, 내가 아인슈타인이 아닌 것 등에 대한 한탄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한탄이며, 일종의 쓸데 없는 공상과 결부된 단순한 무능력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강제를 수반하는 속박으로 인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자유의 제약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강제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반하는 속박과 인간의 신체적 제약이나 자연법칙에

기인하는 단순한 무능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언급할 때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자유의 정의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는 Feinberg, J. (1973, pp. 5-31) 를 참조하라)

2) 自由의 必要性

앞에서 우리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속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적 제약 혹은 자연법칙에 기인하는 단순한 무능력과 관련되는 속박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런 무능력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회제도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무수한 속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찌기 개인심리학자 아들러(A. Adler)는 인간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열등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가지 속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 개인은 열등감에 빠진다. 이런 열등감을 회피 혹은 우회하려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유발하지만, 이런 열등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다. 예컨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다는 무력감, 즉 자연에 대한 열등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행기 혹은 행글라이더를 발명하게끔 유도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자유가 정치적 제도에 의하여 제약받을 때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아들러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속박에 의해 유발되는 열등감의 극복을 중시하고 있다. 즉 열등감의 극복을 인류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유는 왜 필요한가? 즉 자유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자유를 중시하는가? 훔볼트(Von Humboldt), 밀(J. S. Mill), 홉하우스(L. T. Hobhouse) 등의 대략 일치된 견해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쾌락이나 수동적인 만족이 아니라 성장과 자기 실현의 역동적 과정이므로 자유가 그런 최고의 선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Feinberg, J., 1973).

밀(Mill, J. S., 1859)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각자가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개성(individuality)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을 천편 일률적으로 동일한 법과 관습하에서 규제하는 것은 인간 각자의 개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천재성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관습이나 일반 행위 규범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그들의 천재성을 억압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은 그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개성의 적극적 개발을 가능케 하는 길이며,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았다.

하이예크(Hayek, F. A., 1960)도 자유주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자유가 문명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명을 명시적, 암묵적 지식의 성장으로 간주하면서 개인적 자유가 개개인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부여하며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인간에 분산된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 가능케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식의 성장을 더 빠르게 하고 나아가서는 인류 문명을 더 진보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밀과 하이예크의 견해는 약간 상이한 점이 부각된다. 첫째로 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인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개인적 자유를 중요시하였고, 그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보았지만, 하이예크는 인도주의적 차원보다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개인적 자유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지식의 분업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둘째로 밀은 천재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며, 특히 천재들에 대해선 사회가 과격적인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였지만, 하이예크는 그런 천재들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고, 특히 문명의 발전은 개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를 더욱 축소시킨다고 봄으로써 밀과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밀이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다면, 하이예크는 진보로 창조된 새로운 상태가 보다 나은가, 즉 진보가 우리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는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진보의 개념을 만족의 증대로 간주한다면 문명의 변화는 반드시 진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학자에 따라 개인적 자유를 허용하는 논리적인 기초가 다소 다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적 자유의 허용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에 불가결하다고 본다. 이런 기회와 더불어 밀의 언어로 개성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예컨대 아들러의 언어로 열등감의 극복이라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문명의 발전이 가속화된다.

3) 積極的 自由와 消極的 自由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는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다. 소극적 자유는 하이예크(Hayek, F. A., 1960)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 고요, 안전과 같은 유형의 개념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고요는 시끄러움이 "없는 상태", 안전은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소극적 자유에서의 자유는 속박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즉 강제를 수반하는 속박의 부재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에서의 자유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즉 "~ 할 자유" (freedom to)로 정의될 수 있다. 또는 어떤 것을 하는 데에 방해되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곧 "~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의만으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파인버그(Feinberg, J., 1973)는 속박을 적극적인 속박과 소극적인 속박으로 구분한다. 예컨대 돈, 힘, 기술 등의 부족은 특정인이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제약요인들은 특정한 것이 없다(일종의 不在)는 것이므로 소극적인 것들이며, 또한 그것들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속박이다. 이런 요인들을 소극적 속박이라고 한다. 반면에 거누어진 총, 창살이 쳐진 창문, 형법 등은 특정인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한다. 이런 요인들은 명시적으로 현존하는 장애조건이므로 적극적인 속박이다. 파인버그는 소극적 자유를 적극적 속박의 부재로, 적극적 자유를 소극적 속박의 부재로 대략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의에 따른다면 소극적 자유는 외부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설정된 장애요인들, 즉 주로 타인이나 제도에 의한 강제를 수반하는(적극적) 속박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소극적 자유의 대표적인 사례는 밀(Mill, J.S., 1859)에 의해 제시된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개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개개인이 자신들의 일들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개인의 행동이 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국가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데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즉 장애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속박의 부재, 예컨대 돈, 힘, 기술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적극적 자유의 대표적인 개념은 소외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로 정의할 수 있는 마르크스적 자유일 것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상태”로 묘사되는 공산주의의 단계는 적극적 자유가 최상의 상태로 실현되는 경제이다. 이런 경제상태는 인간이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관계까지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지식이 발전한 경제이며, 이런 경제에서 인간은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자연과 사회생활의 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유롭다(Burkitt, B., 1984).

이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자유로부터 결과하는 사회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하이예크적인 소극적 자유로부터는 개인적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는 자유주의 사회, 반면에 마르크스적인 적극적 자유로부터는 개인적 자유가 상당히 규제받는 전체주의적 사회가 유도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념 모두가 개인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도 갖는다는 것에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하이예크와 마르크스적 자유는 모두가 인간적인 자유의 이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수단이 다름으로 인하여 상이한 사회가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비록 상이하다고 주장되지만, 그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Ⅲ. 하이예크의 自由

1) 自由의 定義

하이예크(Hayek, F. A., 1960)는 개인적 자유를 “強制의 不在”(absence of coercion)로 정의한다. 부연하면 한 개인이 임의적인 의지(will)에 따라 타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상태를 강제라고 정의하고, 이런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자유로 간주한다. 따라서 자유를 정의함에는 강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그에 따르면 강제는 한 개인의 행동이 그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봉사하도록 실행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이런 강제의 발생은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과 그 위협으로써 어떤 행동을 발생시키겠다는 의향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

하이예크(Hayek, F. A., 1960)는 “무장한 정복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식민지 사람들이 땀을 흘리도록 만들 때, 조직화된 강패들이 ‘보호’의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할 때, 비밀스런 악행의 인지가 그 희생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때, 그리고 물론 국가가 우리를 그 명령에 복종시키기 위해 형벌을 가하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고 위협할 때 진정한 강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pp. 137-8). 강제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형벌에 대한 무한한 권력이 지배자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이끌어내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 혹은 국민에 대한 독재자의 지배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강제의 정도는 약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강제가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하이예크는 이런 강제가 최소의 수준으로 낮추어진 상태를 자유로 사실상 정의한다.

강제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은 강제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체적 조건 혹은 자연법칙에 따라 우리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 이 경우를 강제라고 한다면 강제의 주체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연의 의지에 따라 우리는 날 수 없다고 하겠다. 하이예크는 이런 경우를 강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음으로 국가가 강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한 개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강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 의한 강제의 위협이다. 소위 자유사회에서 채택되는 민법, 상법, 형법 등은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법의 제재는 한 사람이 특정한 것을 행하는 것을 막거나 혹은 그로 하여금 그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런 법규율들은, 한 개인이 특정한 위치에 있게 되면 그가 강제당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고 또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로 하여금 강제당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법규율들은 자연법칙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하이예크에게는 법규율들이 진정한 의미에선 해롭고 불유쾌한 성질을 갖는 강제가 아니다.

하이예크에게 진정한 강제는 타인들에 의해서 강제가 행사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생존과 관련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자가 사람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매기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체재가 존재하거나 혹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매기고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면 강제가 해소된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노동조합이 클로즈드 쇼프나 유니온 쇼페도를 채택하고, 조합원들을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의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조종할 수 있을 때이다(Hayek, F. A., 1972).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임의적인 간섭, 즉 케인지안 경제정책이 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경우이다(Hayek, F. A., 1944). 특히 하이예크는 정부의 임의적인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모든 경제활동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개개인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활동할 영역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개개인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법규율에 따른 정부의 강제는 자연법칙과 같이 예상되는 것이지만, 임의적인 정부의 간섭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임의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2) 自由의 類型

하이예크(Hayek, F. A., 1960)는 강제의 부재를 자유로 정의하면서, 혼동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자유, 내적(inner) 자유 및 능력(power)으로서의 자유 등을 그의 자유의 개념과 대비시키고 있다.

우선 정치적 자유는 정부의 선택, 입법의 과정 및 행정의 관리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현상으로 집단적인 개념으로서의 자유이며, 개인적 자유와 반드시 양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로 내적 혹은 형이상학적(metaphysical) 혹은 주관적(subjective) 자유는 개인적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순간적인 충동이나 상황보다는 그 자신의 검토된 의지, 그의 이성이나 신념에 의하여 그의 행동이 인도되는 정도를 말한다. 만약 행동하는 순간에 일시적인 흥분, 지적인 약점 혹은 미신 등에 의하여 자신의 이성이나 의지가 약화된다면 그 사람은 내적으로 부자유스럽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 자유를 언급할 때 일단 내적 자유가 허용된 상태를 가정한다.

하이예크는 혼동될 수 있으면서도 위험스런 자유의 개념이 바로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개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개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묘사한다. 그는 "이런 유형의 자유가 사람들이 날 수 있다, 중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새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혹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호

에 따라 그들의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등과 같은 환상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의 꿈 속에 나타난다”(Hayek, F. A., 1960, p. 16)고 주장한다. 물론 새처럼 자유롭게 난다는 것은 신체적인 제약에 의해 불가능하지만, 능력으로서의 자유가 자유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는 특히 욕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주 가난한 사람은 캐딜락을 한 대 사려는 그의 (현실적인 혹은 잠재적인) 욕구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에게 캐딜락을 살 자유는 없다.”(Feinberg, J., 1973, p. 21) 즉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캐딜락을 살 자유는 주어져 있지만, 환언하면 그가 캐딜락을 사는 데에 방해하는 장애물(속박)이 없지만, 실제로 그는 그것을 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능력이 없다면 캐딜락을 살 자유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개념이 시사하는 바이다.

하이예크는 이런 자유의 최대 위협요인은 능력으로서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개인적 자유를 억제 내지는 박탈하거나 또는 자유라는 이름하에 개인적 자유를 포기하도록 권고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전체주의적 국가가 출현할 수 있으며, 그런 국가에선 자유라는 이름하에 자유가 억압되기도 한다. 하이예크가 제일 두려워하는 자유의 개념이 바로 이런 자유의 개념이며, 이런 자유의 개념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지식인들 사이에 보급되고 있으며,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출현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이런 경향을 더욱 조장한다고 보았다. 이런 자유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노예의 상태로 이끈다고 보았는데, 이런 사상이 특히 『隷從에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3) 自由와 責任

자유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책임이다. 행동에 대한 자유가 부여되기 위해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행동하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예크(Hayek, F. A., 1960)는 “자유와 책임은 분리 불가능하다.... 비록 그것[자유]이 개인에게 유일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의 노력의 결과가 무수히 많은 우연적 사건들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들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들인 것처럼 그런 환경에 그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강요한다”(p. 71)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인지하거나 예견하는 여러 환경에도 의존하지만, 행동하는 개인이 전혀 인지 내지는 예견하지 못하는 무한히 많은 환경 요인에 의존한다. 즉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요인들, 그중에서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은 그 결정요인들 중에서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행동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겠

는가? 물론 이런 책임의 적용에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유아나 백치같이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거나 배울 수 없는 사람 또는 정신분열환자같이 통제 불가능한 충동에 의해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 사람 또는 도벽증환자, 알콜중독자같이 통제 가능한 충동으로 고통받는 사람 등에 대해선 자유의 원리, 즉 행동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 부여가 적용될 수 없다.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본시각은 책임의 부여가 행동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즉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개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질서를 형성시키고 또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우리는 개개인들의 상이한 심리를 완벽히 파악하고 통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다양한 개인의 심리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 결과 이런 우리의 무능력에 대처하는 사회적 제도가 바로 행동하는 개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 개인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책임의 부여를 통해서 올바른 사회질서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행동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는 상당부분이 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다. 이 경우에 책임의 범위는 행동하는 개개인이 대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고려하리라고 생각되는 효과에 한정한다. (예컨대 도둑질을 할 자유는 있지만 도둑질을 하다가 들킬 때 도둑은 물건에 대한 변상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의 부여와 관련하여 제일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소득분배, 즉 개인에 대한 보수문제일 것이다. 개인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행동하는 개인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무수히 많은 요인들 중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개인은 이런 무수히 많은 요인들 중 극히 적은 부분만을 극히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자유사회에선 자신의 보수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하이예크(Hayek, F. A., 1960)는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 사람이 수령하기를 희망할 수 있는 보수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숙련과 능력보다는 오히려 그런 숙련과 능력을 올바른 용도에 잘 배분하였는가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최선의 고용처를 발견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은 커질 것이며, 동일한 기술적 숙련이나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의 보수격차도 마찬가지로 커질 것이다" (p. 80) 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능력 혹은 자질이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의 적절한 배분이 보수를 결정하는데, 이 때의 적절한 혹은 올바른 배분은 그 사람의 탁월한 지적 능력(예컨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 노력 등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생산에 대한 기여는 시장에서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므로,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보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수요와 공급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그 개인의 입장에선)에 의존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쩌면 가혹할지도 모른다.

IV. 하이예크의 자유에 대한 批判

하이예크의 자유에 대하여 몇 가지 비판을 시도해 보자.

첫째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하이예크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다. 하이예크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개념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자유의 개념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또한 전체주의적 국가로 귀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능력으로서의 자유가 사실상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자유의 극단적인 사례는 마르크스적 자유로서 인간이 자연과 사회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을 때 적극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적극적 자유는 그와 같은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된 빈자와 캐딜락의 구매에 관한 사례처럼 그런 비싼 사치재를 사지 못하더라도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생존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즉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할 수 있다.

하이예크는 최저생계비의 보장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선 롤즈(Rawls, J., 1971)의 견해에 동감한다. 결과적으로 하이예크의 입장은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적극적 자유의 일부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비록 하이예크가 소극적 자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J.S. 밀이 당시에 요원의 불길처럼 등장했던 사회주의의 물결을 무시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이예크도 적극적 자유, 특히 능력으로서의 자유의 개념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Kukathas(1989)도 갖고 있다)

둘째로, 강제 개념을 검토하자. 강제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지배나 국민에 대한 독재자의 지배와 같은 거의 완벽한 사례로부터 비폭력적인 위협 또는 잔소리 같은 매우 미약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하이예크(Hayek, F. A., 1960)는 “강제가 그렇게 정의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강제가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되고 있다”(p. 139)고 언급한다. 이런 견해에 대해 무정부주의적이면서 극단적 자유주의자인 로스바드(Rothbard, M., 1982)는 잔소리 많은 아내, 까다로운 남편, 대량실업시 해고 또는 해고의 위협, 생필품 독점자의 임의적인 가격결정 등의 사례를 예시하면서 이런 사례들은 강제의 유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하였으며, 폭력적인 행동이나 그 위협만을 강제로 간주할 것을 주장하였다(pp. 219-22). 그리고 하이예크는 개인간의 강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사회는 국가에게 강제의 독점을 허용하였으며 그리고 모두에게 알려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율이 시행된다면, 즉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실행된다면 강제가 최소화된다고 보았지만, 이에 대해 로스바드는 법의 지배가 반드시 자유사회를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pp. 223-7). 이와 같은 비판이 가능한 것은 강제의 정의가 완벽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특히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사회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로, 자유와 분배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이것은 첫째의 비판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이예크는 자유와 책임간의 문제에서 특히 개인에게 귀속되는 보수는 그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요인들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투입한 어떤 사람은 환경적 여건의 불리로 인하여 매우 낮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그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모자라고 노력도 별로 많이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환경적 여건의 유리로 또는 우연적인 행운으로 많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불운한 사람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면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하겠다. 이 경우는 롤즈(Rawls, J., 1971, pp. 105-9)의 용어로 純粹한 節次的 正義에 해당되며, 하이예크도 이런 순수한 절차적 정의에 동감하는 것 같다.

만약 불운한 본인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거나 혹은 전혀 얻지 못한다면, 하이예크(Hayek, F. A., 1960)는 "비록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한 기아의 위협이 매우 낮은 임금에서 지겨운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본인이 본인을 기꺼이 고용하려는 유일한 사람의 '자비'에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 (p. 137)고 주장한다. 여기서 강제되지 않는다는 개념은 다른 곳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굶을 자유(p. 18)도 있다(고용주가 강제적 노동을 강요할 때에는)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사람들은 인내심이나 의지력이 매우 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이예크(Hayek, F. A., 1960)가 언급하는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p. 138)이다. 따라서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굶을 자유는 사실상 자유일 수 없으며, 그들은 어떠한 지겨운 노동을 하여야 한다. 버키프(Burkitt, B., 1984)가 언급하는 것처럼 어느 공장에서 지겨운 노동을 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에선, 즉 사소한 관점에서의 선택에선 자유가 있으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지겨운 일을 하느냐에 관한 중대한 선택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겨운 일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 사회에선 많은 사람들이 부자유로 고통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자유사회와는 역행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사회의 미래를 검토해 보자. 하이예크(Hayek, F. A., 1960)는 보수주의자들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또는 변화에 역행하려고 시도하며(복고주의), 그리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도 정부에 의한 극히 질서 있는 변화만을 옹호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옹호하는 자유주의는 고요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가기를 원하는 변화 옹호론이며, 자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런 자발적 변화가 정부통제에 의해 질식되는 경우 정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pp. 397-411). 그의 견해는 사회제도 진화론이다.

그런데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선 하이예크는 막연히 개인적 자유가 더욱 신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진화론에서는 생물학의 경우에도 진화의 결과 특정한 생물의 특정한 모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더욱이 사회현상에 대해선 진화의 결과 특정한 사회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필연성을 보여주는 법칙은 당연히 유도될 수 없다. 이것은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가 무한히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이예크의 이론도 진화론이기 때문에 진화의 결과 어떤 사회가 출현하느냐에 대해선 예측이 불가능하다. 진화의 결과 하이예크가 가장 우려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출현할 수도 있다. 또는 국민의 여론이 복지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이런 복지제도가 경제체제에 대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제도의 진화는 반드시 자유사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나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력한 복지국가 발생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적 자유가 억제되거나 또는 정부의 간섭이 대단히 크게 증대될 것이다. 소위 隸從에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

V. 結 論

하이예크의 자유는 "강제의 부재"로 정의되며, 자유에 따른 책임의 부여를 중시한다. 하이예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현재 채택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결코 외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J. S. 밀이 그의 시대에 당면하였던 사회주의 사상과의 갈등과 대단히 유사하다. 물론 하이예크의 자유를 검토 혹은 비판함에는 현재 사회철학에서 자유에 대한 합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음도 유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해가 적극적 자유에 물들여져 있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이다. 적극적 자유는 하이예크가 가장 우려하는 상태인데, 그가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자유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 자유의 최대한 허용과 그에 따른 책임의 부여를 중시하지만,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대단히 모호하다. 특히 소득과 관련해서 책임의 소재가 극히 제한적이며, 따라서 소득은 극단적으로 언급한다면 개인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운행에 따른 운과 불운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자유와 굶을 자유는 커다란 갈등을 빚는다. 노동에 있어 강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고 굶을 자유도 있다고 하이예크는 주장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굶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따라서 자유사회에서 굶을 자유를 가지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강제의 가능성이 상존

하는 직종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

또한 하이예크는 사회의 자발적 변화를 옹호하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자유사회를 낳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특히 국민 여론이 사회주의 사회나 복지사회를 요구하면 하이예크가 옹호하는 개인적 자유가 억제되거나 혹은 정부간섭이 증대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법의 지배하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가능성을 갖는다.

參考文獻

- 설영환 편역(1987),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선영사.
- Burkitt, B. (1984), *Radical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the Alternative Economics*, Wheatsheaf Books Ltd.
- Feinberg, J. (1973), *Social Philosophy*(문창옥 역: 『社會哲學』, 종로서적, 1992), Prentice-Hall.
- Hayek, F. A. (1944), *The Road to Serfdom*(鄭道泳 역, 『隷從에의 길』, 삼성문화문고, 1973), Routledge & Kegan Paul.
-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Routledge & Kegan Paul.
- (1972), *A Tiger by the Tail*(Shenoy, S. R., ed.),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Kukathas, C. (1989), *Hayek and Modern 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 J. S. (1859), *On Liberty*(김형철 역: 『자유론』, 서광사, 1992).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광사, 1985), Harvard University Press.
- Rothbard, M. (1982), *The Ethics of Liberty*, Humanities Press.
- Shand, A. H. (1984), *The Capitalist Alternative: An Introduction to Neo-Austrian Economics*, Wheatsheaf Books Ltd.